2026.9.17.

국회예산정책처 | 나보포커스 | 제176호

nabo Focus

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: 2027년 시행을 앞두고

세제분석1과 이정훈 분석관

논의 배경

▪ **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12월 「소득세법」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,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·대여분부터 최초 시행될 예정[1)]**

-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,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장 여건과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 상황 등을 반영해 세 차례 유예됨
- 본격적인 과세 시행에 앞서 세원포착의 한계, 과세인프라 구축,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, 거래손실의 인식 범위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

▪ **이하에서는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, 과세 시행에 앞서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을 점검하고자 함**

가상자산 소득과세 개요

▪ **현행 「소득세법」은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가상자산을 양도·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, 분리과세하도록 규정**

-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,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(취득가액·부대비용)를 공제한 후,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%(지방세 포함 22%)의 세율로 과세
  * 단, 과세 시행일 전 보유분에 대해서는 2026.12.31.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
-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가상자산 소득을 자진신고·납부해야 하며,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*하도록 함
  * 양도가액의 10%와 양도차익의 20%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

[표 1]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개요

구분	내용
과세대상	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상 가상자산의 양도(매매·교환)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
소득구분 / 세율	기타소득 / 20%(지방소득세 포함 시 22%) 분리과세
필요경비	(원칙)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(예외)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50%를 필요경비로 의제
과세최저한(기본공제)	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으며, 초과 시 250만원을 공제
손익통산·이월공제	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 불가,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
신고·납부	(거주자) 다음 해 5월 자진 신고·납부 / (비거주자) 양도·대여·인출 시 원천징수

자료: 「소득세법」 및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참고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4건의 「소득세법」 발의안이 국회 계류 중('26년 9월 7일 기준)
[시행유예] 2204341(송언석의원), 2220515(정성국의원), 2220914(김상훈의원)
[과세폐지] 2217609(송언석의원)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가상자산 시장 동향

▪ **2025년 하반기 기준,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계정 수는 1,113만개, 일평균 거래규모는 5.4조원 수준[2)]**

- 2025년 하반기 기준 국내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(87.2조원)은 상반기 대비 7.9조원(△8%) 감소하였으나, 이용자 계정 수(1,113만개)는 36만개(+3%) 증가
- 국내거래소 거래 종목은 1,732개로 꾸준히 증가하면서, 새로운 자산의 취득/거래 등이 확대
- 자산 1천만원 이상 계정은 112만개로 전체의 10% 수준인 반면, 대다수 계정(74.2%)은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남

▪ **국내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액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2024년 12월 3,684억 달러(약 495조원)를 정점으로, 2025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**

[그림 1]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월간 가상자산 거래액 추이

(단위: 억 US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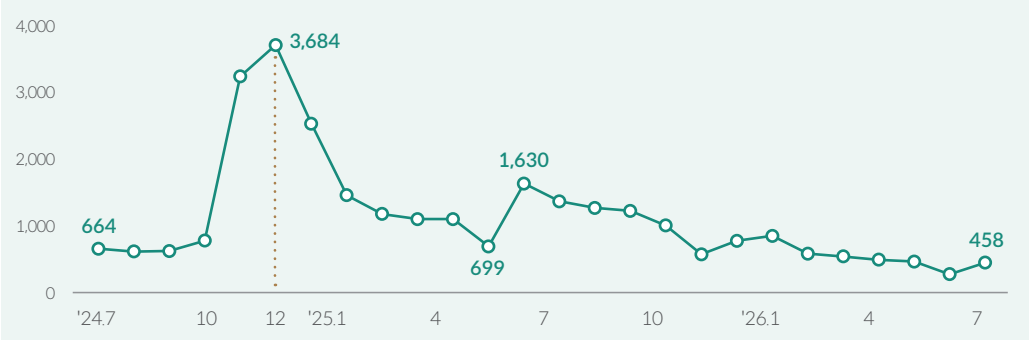

자료: The Block, 'Monthly Exchange Volume'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쟁점① 세원 포착의 한계

▪ **가상자산사업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, 모든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은 기술적으로 어려움**

- 탈중앙화 거래 및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고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모든 거래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
  - **(탈중앙화거래)** 블록체인 기술(스마트 컨트랙트)을 활용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가상자산을 교환할 경우,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음
  - **(장외거래)** 하드웨어 지갑(Cold wallet) 등을 활용한 장외거래는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워,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존재함

▪ **한편,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 제출·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,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**

-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7년부터 OECD CARF를 통해 참여국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자동교환이 개시될 예정이나, 국가별 이행시기 차이로 세원 포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
  - 우리나라는 2025년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개정 등을 통해 정보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, 2027년 첫 정보교환 그룹(46개 국가·관할권)에 포함됨[3)]
  - 반면, 캐나다·스위스·싱가포르·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, 미국은 2029년에 첫 정보교환을 개시할 예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정보교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[4)]

2) 금융정보분석원·금융감독원, '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', 보도자료, 2026.3.26.

3) OECD Global Forum, 'Jurisdictions committed to implement the Crypto-Asset Reporting Framework,' 2026.6.23.

4) 다만,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(부정행위 15년)으로,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쟁점② 신고·납부 인프라 구축

▪ **과세 시행 시 자진신고 경험이 없는 개인 납세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, 가상자산 거래 특성상 손익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·거래이력 확인이 까다로워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**

-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여러 거래소·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취득·이전되는 경우가 많아, 납세자가 스스로 거래를 파악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
-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 시행에 앞서 올해 7월 전담조직(디지털자산총괄과)을 신설했으며, 2026년 말까지 거래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「(가칭)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」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[5]

▪ **주요국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래정보를 신고·검증 인프라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음**

- **(미국)**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브로커(거래소)는 Form 1099-DA를 통해 거래대금(Gross proceeds)을 국세청(IRS)에 보고하고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납세자에게도 제공하도록 의무화[6]
- **(일본)**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일자·수량·매매금액 등이 기재된 "연간거래보고서"를 제공받아, 과세관청이 배포한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도록 함

쟁점③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

▪ **현행 「소득세법」은 가상자산의 양도·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스테이킹·렌딩·하드포크·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**

- **(스테이킹)**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검증 참여의 대가로 코인을 보상받는 것으로, 대여의 대가로 보면 대여소득이지만 검증용역의 대가로 보면 기타소득·사업소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
  - (과세시점·과세표준) 보상이 자동으로 재스테이킹되는 경우 지급일과 시가 산정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움
- **(렌딩·유동성공급)** 코인을 빌려주거나 유동성 풀에 예치하고 수수료·보상을 받는 거래로, 통제권·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대여로 구분 가능
  - (과세시점·과세표준) 대여소득으로 보면 대가를 받은 시점에, 양도로 보면 예치 시점에 과세할 수 있어 견해가 갈림
- **(하드포크·에어드롭)** 블록체인 분리 또는 무상 배포로 대가 없이 새 코인을 취득하는 것으로, 취득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함[7]
  - (과세시점·과세표준) 취득시점 시가로 과세할지, 양도시점에 취득가액을 '0'으로 보아 일괄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음

▪ **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, 고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[5]**

---

5) 국세청, '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국세청의 과세 준비현황', 국회예산정책처 서면답변, 2026.9.7.

6) 美재무부·IRS, Digital asset broker reporting rules(Form 1099-DA), 2024.6.

7) 기획재정부 예규(재산세제과-814, 2022.7.25.)는 무상이전을 증여세 대상이라 판단했으나, 조세심판원(조심2025서2821 등)은 이벤트성 에어드롭을 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판단

쟁점④ 가상자산 거래 손실의 인식 범위

▪ **현행 법은 가상자산 소득을 계산할 때 동일 과세기간 내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발생된 순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**

-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세(Capital gains tax)로 과세하는 미국·영국 등은 손익통산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기간 제한 없이 결손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함
- 일본은 2028년부터 자국 내 등록 거래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 한해 3년의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계획임[8)]

▪ **가상자산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논의는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과세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**

- 현행 우리나라 세법 체계 하에서는 국내주식·해외주식·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

  * 반면 미국·영국은 주식·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면서, 양도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함

[표 2]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및 손익통산·이월공제 여부

구분	과세 방식	손익통산·이월공제
국내 주식[1)]	·대주주[2)]: 20/25% 누진과세 ·장외거래 등: 10/20% 분리과세	- 주식·파생상품 양도소득 간에는 손익통산 가능 -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음
해외 주식	20% 분리과세	
파생상품	기본세율 10%(탄력세율)	

주: 1)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양도분·장외양도분, 비상장주식 등이 과세 대상으로, 소액주주의 경우 코스피·코스닥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(단, 증권거래세·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세는 과세)
2)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%·코스닥 2%·코넥스/K-OTC 4% 이상 보유 시

자료: 「소득세법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향후 과제

▪ **(세원관리 강화) 국세청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,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**

- 가상자산 거래 추적·검증 기술 개발 등과 함께, 장외거래나 CARF 미이행국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자진신고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
- 한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, 가상자산 거래 파악이 용이한 국내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고려할 수 있음
  - 일본은 등록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(20%)·이월공제(3년)를 적용할 예정(해외거래소 거래 등은 누진과세(최대 55%) 및 이월공제 불가)

▪ **(신고·납부 인프라 구축) 시행 전까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·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갖출 필요**

- 거래소와 연계하여 취득가액·손익 등을 자동으로 계산·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
- 시행 초기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,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·홍보를 병행할 필요

▪ **(과세기준 명확화) 과세 시행에 앞서 불확실한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**

- 시행 전까지 과세관청은 고시·예규 등의 행정해석과 FAQ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할 필요

8) 일본 재무성, '2026년도 세제개정대강(令和８年度税制改正の大綱)', 2025.12.26.

발간등록번호 | 31-9700484-001731-14 ISSN | 2672-0280
발행처 |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|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담당 |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문의 | 02-6788-4669
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